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31, 3723, 37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제목개정 2012. 4. 13.,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3조(경미한 도시 · 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2023. 1. 2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 · 군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 · 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9. 8.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 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4. 17., 2008. 3. 14., 2011. 2. 25., 2013. 3. 23.,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목개정 2012. 4. 13.]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제20조·제2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전문개정 2006. 3. 28.]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0., 2012. 4. 13., 2014. 1. 17.>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9.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09. 8. 19., 2010. 2. 23., 2012. 4. 13., 2013. 3. 23., 2015. 6. 30., 2016. 2. 12., 2016. 5. 26., 2016. 12. 30., 2017. 3. 30., 2018. 12. 27., 2019. 3. 18., 2019. 8. 7., 2020. 10. 19., 2023. 1. 27.>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 12. 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2018. 12. 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23. 1. 27.>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 · 제6호 · 제6호의2 ·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 [제목개정 2019. 8. 7.]

제7조(도시 · 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4. 13.>

[제목개정 2012. 4. 13.]

제8조(미집행도시 · 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 · 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2. 4. 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 · 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2012. 4. 13.>

[제목개정 2012. 4. 13.]

제8조의2(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 12. 30.>]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5. 2. 1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 12. 30.>]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5. 2. 19.]

[제8조의3에서 이동 <2016. 12. 30.>]

제9조(개발행위가신청서)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9. 8., 2016. 5. 26.>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서 개발행위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용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 5. 26.](#)>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3. 28., 2007. 4. 17.,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23. 1. 27.](#)>

1. 폐염전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및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7. 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본조신설 2016. 5. 26.](#)]
[[제목개정 2016. 7. 1.](#)]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6. 5. 26.](#)>]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2. 14., 2012. 4. 13., 2013. 3. 23., 2014. 1. 17., 2016. 5. 26.](#)>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6. 9. 1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6. 5. 26.>]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11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9., 2009. 12. 14., 2012. 4. 13., 2015. 6. 4.>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 5. 26.>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3., 2016. 5. 26.>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3.>

③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사용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

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 ·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6(물납신청서)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2. 4. 13.\]](#)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본조신설 2008. 9. 29.\]](#)

제11조의8(독촉장)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9. 29.\]](#)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12. 4. 1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목개정 2012. 4. 13.\]](#)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9. 29., 2013. 3. 23., 2015. 6. 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 신고 · 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 2. 19.\]](#)

제14조(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목개정 2012. 4. 13.\]](#)

제15조(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11. 4. 11., 2012. 4. 13., 2013. 3. 23., 2022. 1.

[21.>](#)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목개정 2012. 4. 13.\]](#)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2014. 1. 17., 2016. 2. 12., 2019. 8. 7., 2023. 1. 27.>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

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50톤,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150톤, 부피는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3.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 · 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 2019. 8. 7.>](#)

제17조(도시 · 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4. 13.>](#)

[제목개정 2012. 4. 13.]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9조 삭제 [<2017. 1. 20.>](#)

제20조 삭제 [<2017. 1. 20.>](#)

제21조 삭제 [<2017. 1. 20.>](#)

제22조 삭제 [<2017. 1. 20.>](#)

제23조 삭제 [<2017. 1. 20.>](#)

제24조 삭제 [<2017. 1. 20.>](#)

제25조 삭제 [<2017. 1. 20.>](#)

제26조 삭제 [<2017. 1. 20.>](#)

제27조 삭제 [<2017. 1. 20.>](#)

제28조 삭제 <2017. 1. 20.>

제29조 삭제 <2017. 1. 20.>

제29조의2 삭제 <2017. 1. 20.>

제30조 삭제 <2017. 1. 20.>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삭제 <2006. 6. 7.>

제34조 삭제 <2006. 6. 7.>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6조(보고) ① 시 · 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 · 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4. 1. 17.>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 · 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 ·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 · 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 제18호 · 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중 “상세계획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 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도로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 · 도시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2항 · 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증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5. 2.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호,2005.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 2005. 9. 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7호, 2006. 3. 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6호, 2006. 6.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0호, 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2006.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 2007. 3. 19.>(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07.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 2007. 11.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4호, 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 2008.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9호, 2008. 12. 31.>(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160호, 2009.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호, 2009. 12. 1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4호, 2010.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 201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 2011. 8. 30.>(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56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도시·군계획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로 한다.

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물·도로·하천·교량·도시계획선"을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군계획선"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군계획시설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을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분야"를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⑯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의3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⑳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를 각각 "도시·군계획도"로 한다.

㉒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㉓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⑩ 까지 생략

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63호, 2014. 1. 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69호, 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 2015. 6.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호, 201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 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 201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제3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 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91호, 2017. 1.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 ·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14호, 2017. 3. 30.>(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71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 201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 201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0. 3.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770호, 2020.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21.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099호, 2022. 1. 2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118호, 2022. 3. 30.>(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 2023.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2.>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나. 조사비: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다. 설계비: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라. 일반관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마.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의 건물·임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 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샌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3.19>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인 경 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매립장소				
준공인가연월일	. . .	매립공사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월)
매립면적	면허면적(m^2)			
	준공인가면적(m^2)			
용도지역				
매립목적				
구비서류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 상의 지형도 1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m^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기 관 명

우 ○○과	주소 과장 ○○○	전화/ 사무관 또는 주사 ○○○	전송/ 담당자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구역 · 어항구역 · 산업단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농업진흥지역 · 보전임지)을/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애래 -

건 명	
위 치	
지 정 면 적(m^2)	
지정근거 및 일자	
지 정 사 유	
도시 · 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지 정 관 계 법 령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적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2. 항만구역 · 어항구역 · 산업단지 ·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m^2)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우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m ²)	⑥지번
도시 · 군계획시설 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m ²)	⑨결정시기
	현황			⑩실시계획인가일
토지에 있는 건축 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 (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m ²)	⑭총수
				⑮사용 연수
매수청구에 관계되 는 권리	⑯권리종류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⑰설정기간	⑱잔존기간	⑲담보 (한도)
비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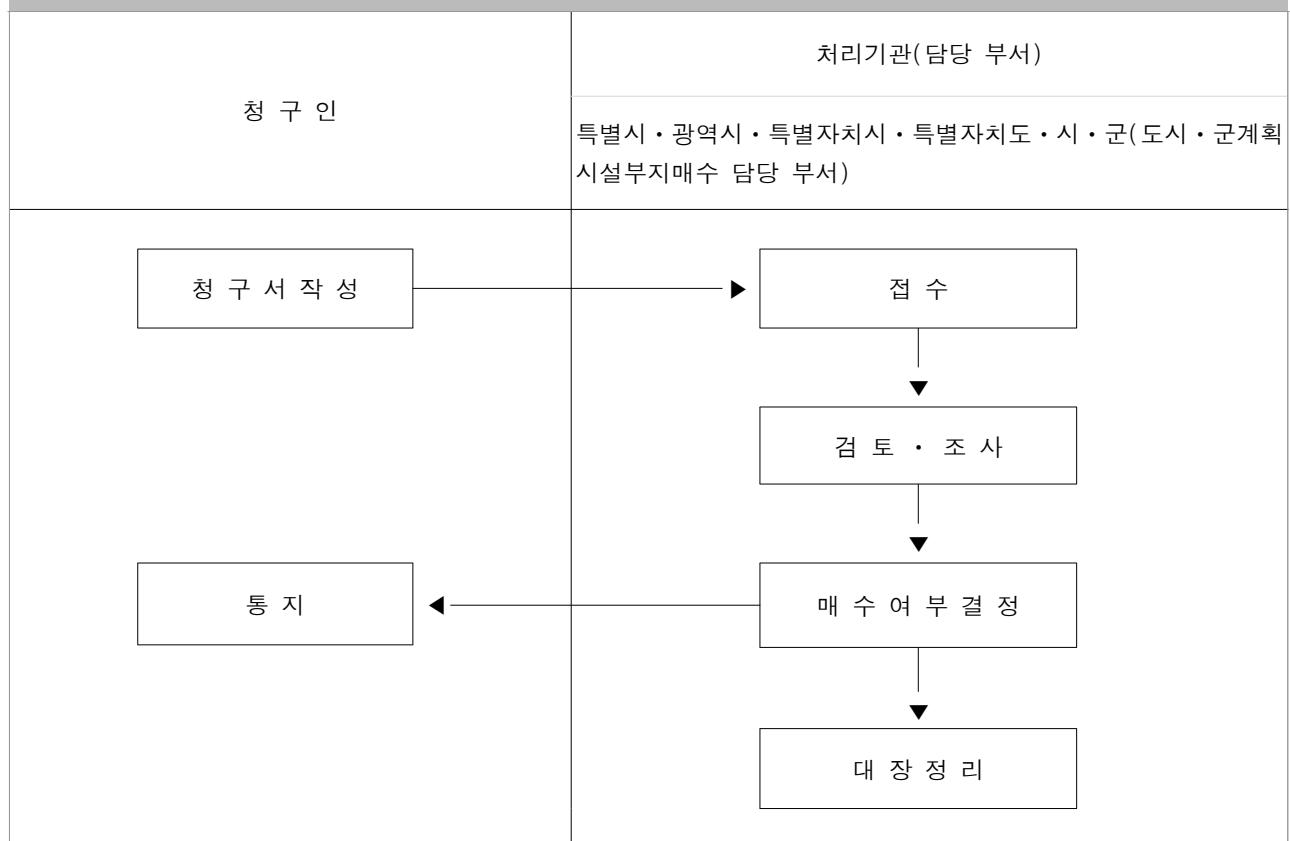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작성 방법>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3. ⑧·⑨·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4. ⑪~⑯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5. ⑯~㉑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4.13>

(앞 쪽)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관리번호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지정 당시 현황																			
②위 치								③작성일자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④ 시설명		⑤시설의 세분		⑥ 편입면적		⑦ 결정시기		⑧실시계획 인가일									
건축물현황		⑨ 대지면적		⑩ 주용도				⑪작성자		(서명 또는 인)									
		⑫ 건축면적		⑬ 구조				⑭확인자		(서명 또는 인)									
소유자		⑮주소		우 (전화:)				⑯성명											
2. 건축물·공작물 및 대지현황																			
건축물현황	⑯동별번호	⑰용도	⑲구조	규모(m ²)						㉖허가연월일	㉗허가번호	㉘준공연월일							
				㉐지하	㉑1층	㉒2층	㉓3층	㉔4층 이상	㉕소계										
공작물현황	㉙동별번호	㉚용도 (시설물)	㉛구조	㉜면적	㉝높이	㉞허가연월일	㉟허가번호	㉟준공연월일	㉟대지현황 (m ²)	㉟토지면적	㉟대지	㉟형질변경	㉟농지전용	㉟기타					
3. 매수여부 결정																			
㉟청구일자				㉟결정일자 (매수, 미매수)				㉟매수일자											
4. 허가 및 신고사항																			
㉟행위 구분	㉟구조	㉟규모	㉟용도	㉟허가연월일	㉟허가번호	㉟준공연월일	㉟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㉟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⑤④사진 현황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읍·면·동 단위로 일련번호(시·군 자체관리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③란에는 최초(구 관리대장) 작성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④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4. ⑤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세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5. ⑪⑫란에는 담당자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6. ⑭⑮란에는 담당 과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7. ⑯⑯란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8. ⑰⑲란에는 동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사진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9. ⑱⑳⑲란에는 주택·창고·축사 등을 적어야 합니다.
10. ⑲⑳⑶란에는 벽돌·슬레이트·목조 등을 적어야 합니다.
11. ㉖㉗㉘란에는 허가(신고)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2. ㉗㉘㉙란에는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3. ㉘㉙㉚란에는 준공연월일 및 공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4. ㉛란에는 신축·증축·재축·개축·용도변경 등을 적어야 합니다.
15. ㉕란에는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현황 사진 및 각 동별 사진을 첨부하고 시장·군수의 직인으로 간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3) 주소 (우) (전화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④ 위치	⑤ 면적(m ²)	⑥ 지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 시설명	⑧ 편입면적(m ²)
	현황		
	구분	⑩ 실시계획인가일	⑪ 실효시기
현황			
해제입안 신청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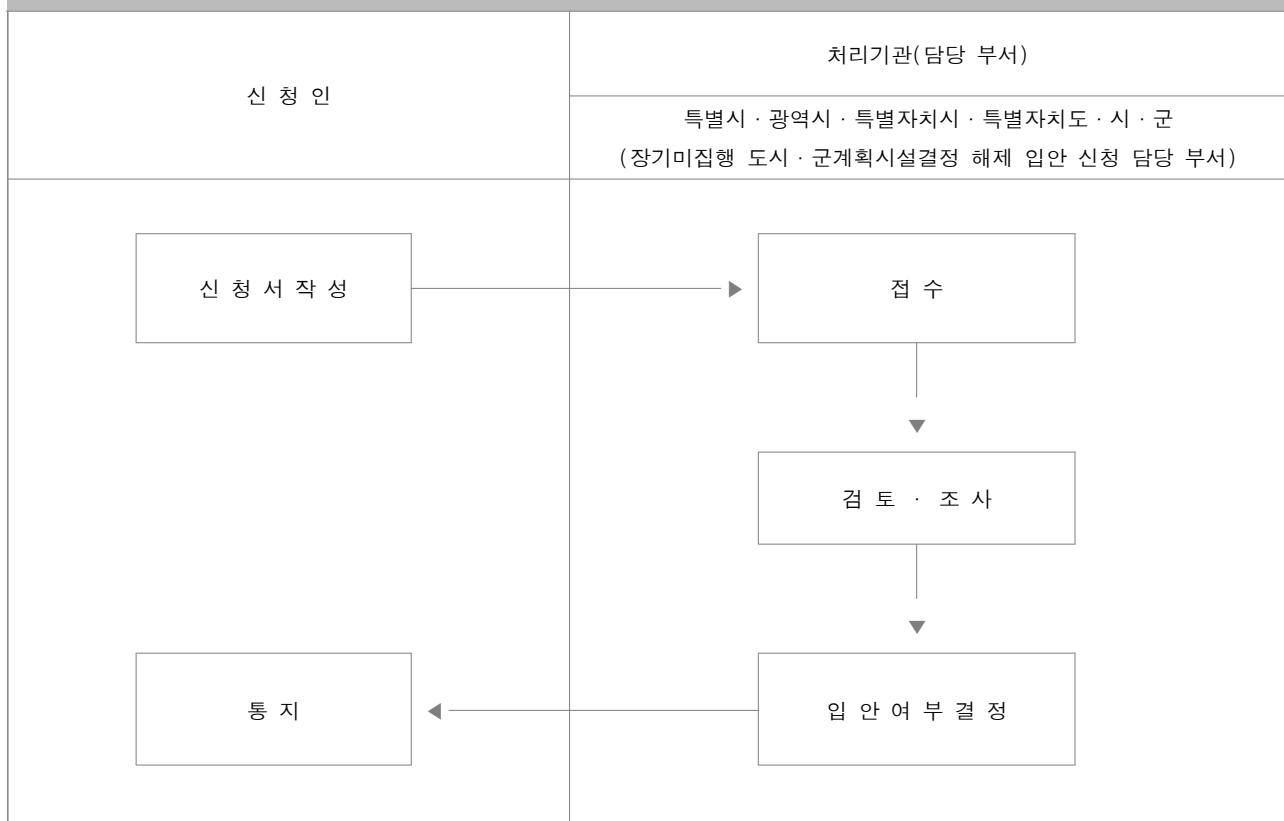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방법

1. ⑦ 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2. ⑧~⑫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토지소유자	(1)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3) 주소 (우)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4) 위치	(5) 면적(m ²)	(6) 지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7) 시설명	(8) 편입면적(m ²)
	현황		
	구분	(10) 실시계획인가일	(11) 실효시기
현황			
해제 신청 사유	구분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3)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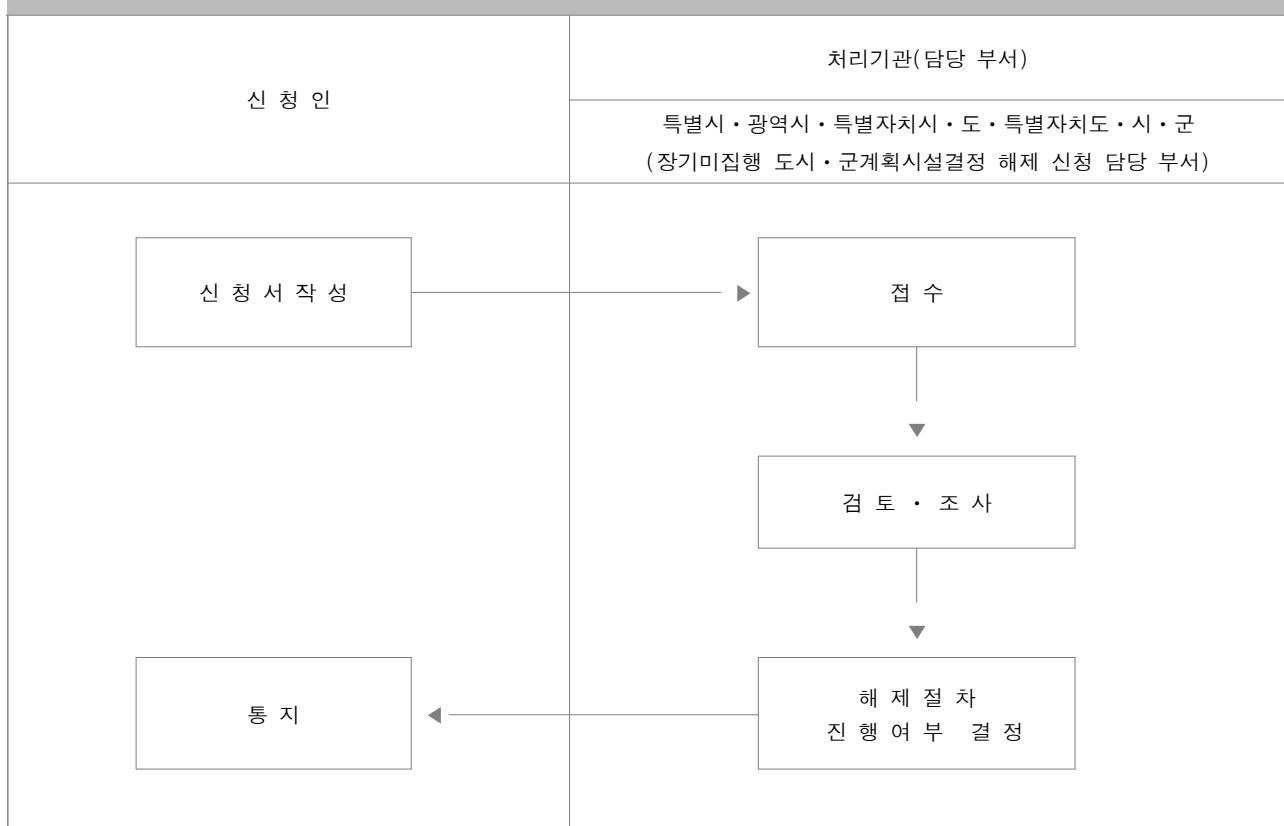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방법

1.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2. ⑧~⑫란은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해제신청사유는 ⑬중에서 선택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토지소유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우)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④ 위치	⑤ 면적(m ²)	⑥ 지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 시설명	⑧ 편입면적(m ²)
	현황		
	구분	⑩ 실시계획인가일	⑪ 실효시기
현황			
해제 신청 사유	구분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⑯선택 (✓)		
해제 심사 신청 사유	구분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⑯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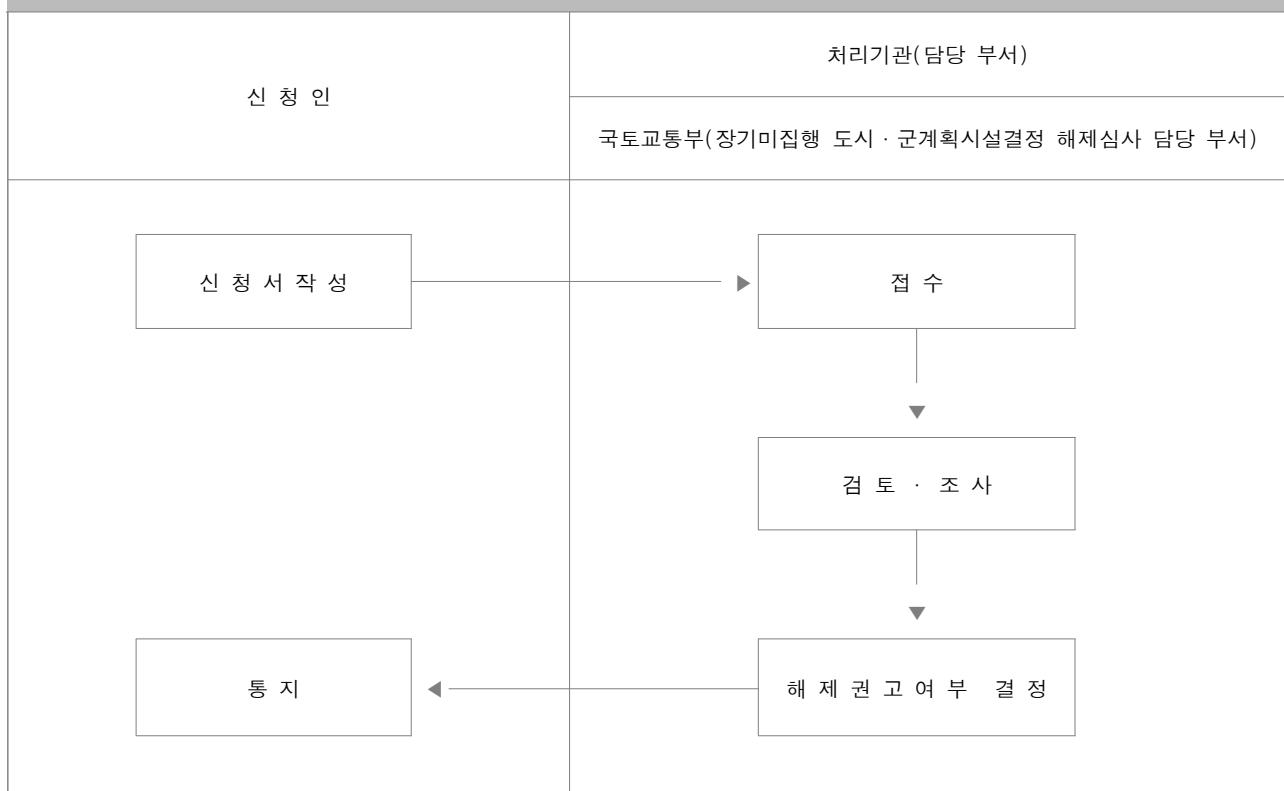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⑦ 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2. ⑧~⑫란은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해제신청 사유와 해제심사신청 사유는 각각 ⑬ ⑭중에서 선택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 27.>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창업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 표를 합니다.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변경)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신청면적	무게
	설치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변경	입목식재	주요수종
		현황	입목지 무입목지
	토석채취	신청면적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 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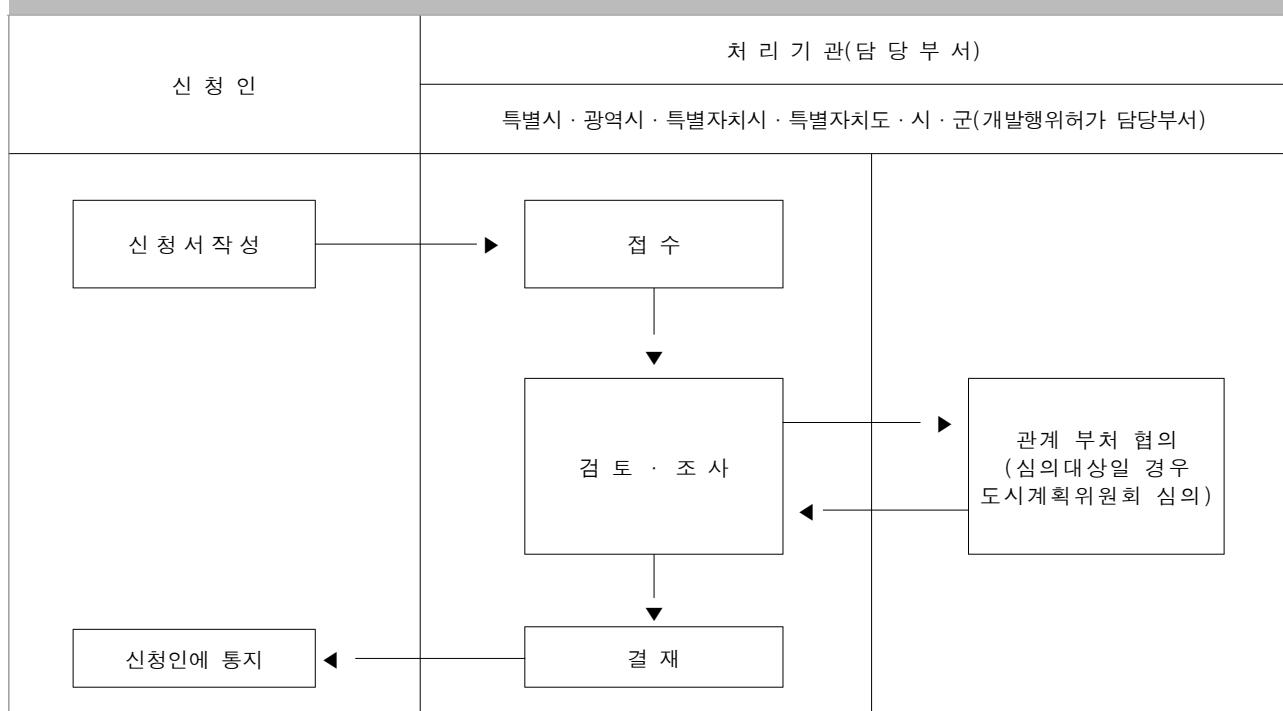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m² 필지의 일부인 100m²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m²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m²)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m²→2,000m² (입목별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2. 3. 30.>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면적	m ²		
	명령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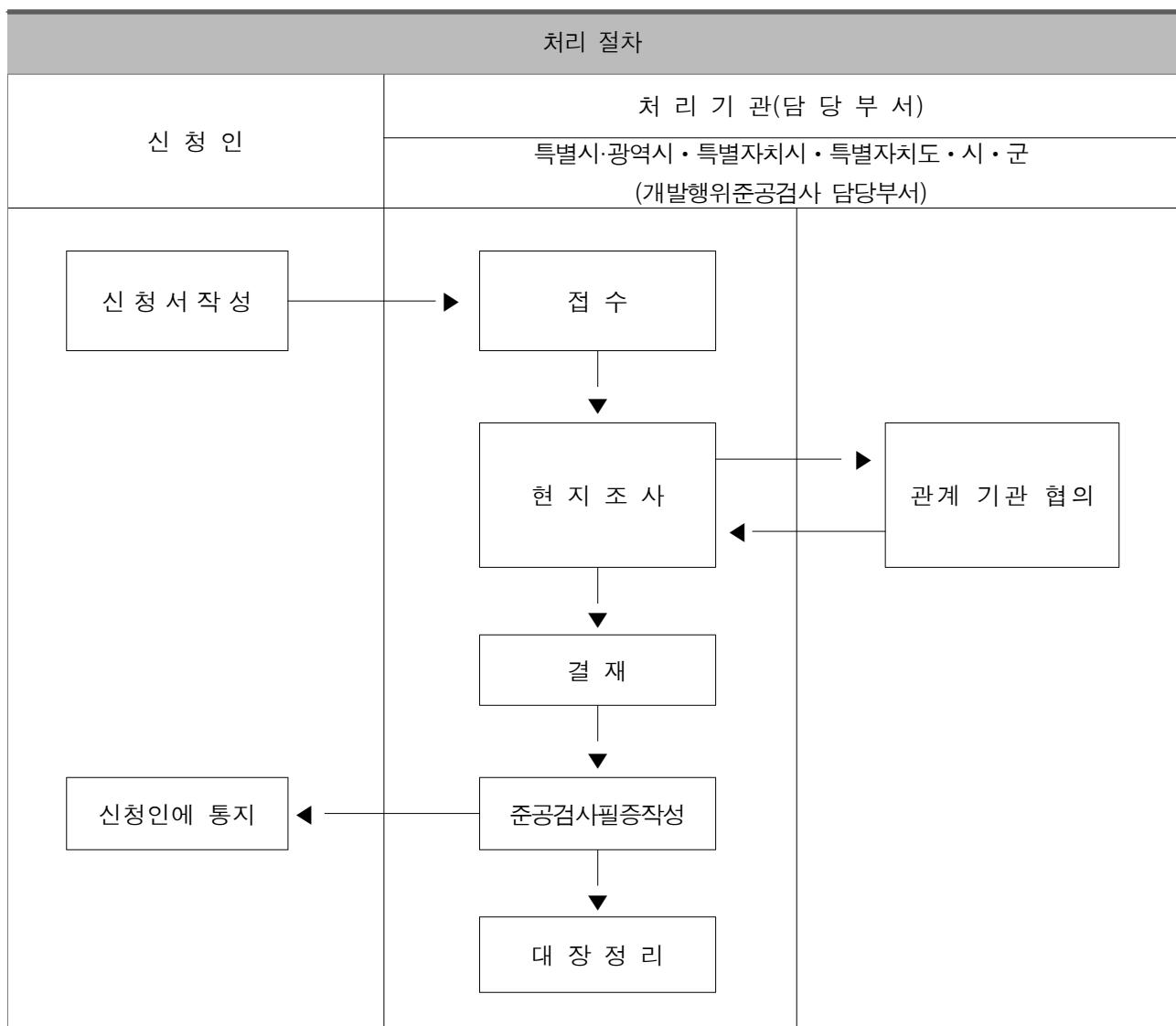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7>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행위)의 명칭

준공 내용	위치
	면적
	사업기간
	기타
	준공검사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행위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종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주요수종
		현 황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합병 및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 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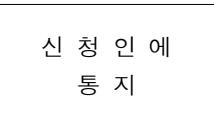
현지조사

관계기관협의

신청인에
통지

결재

대장정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뒷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m 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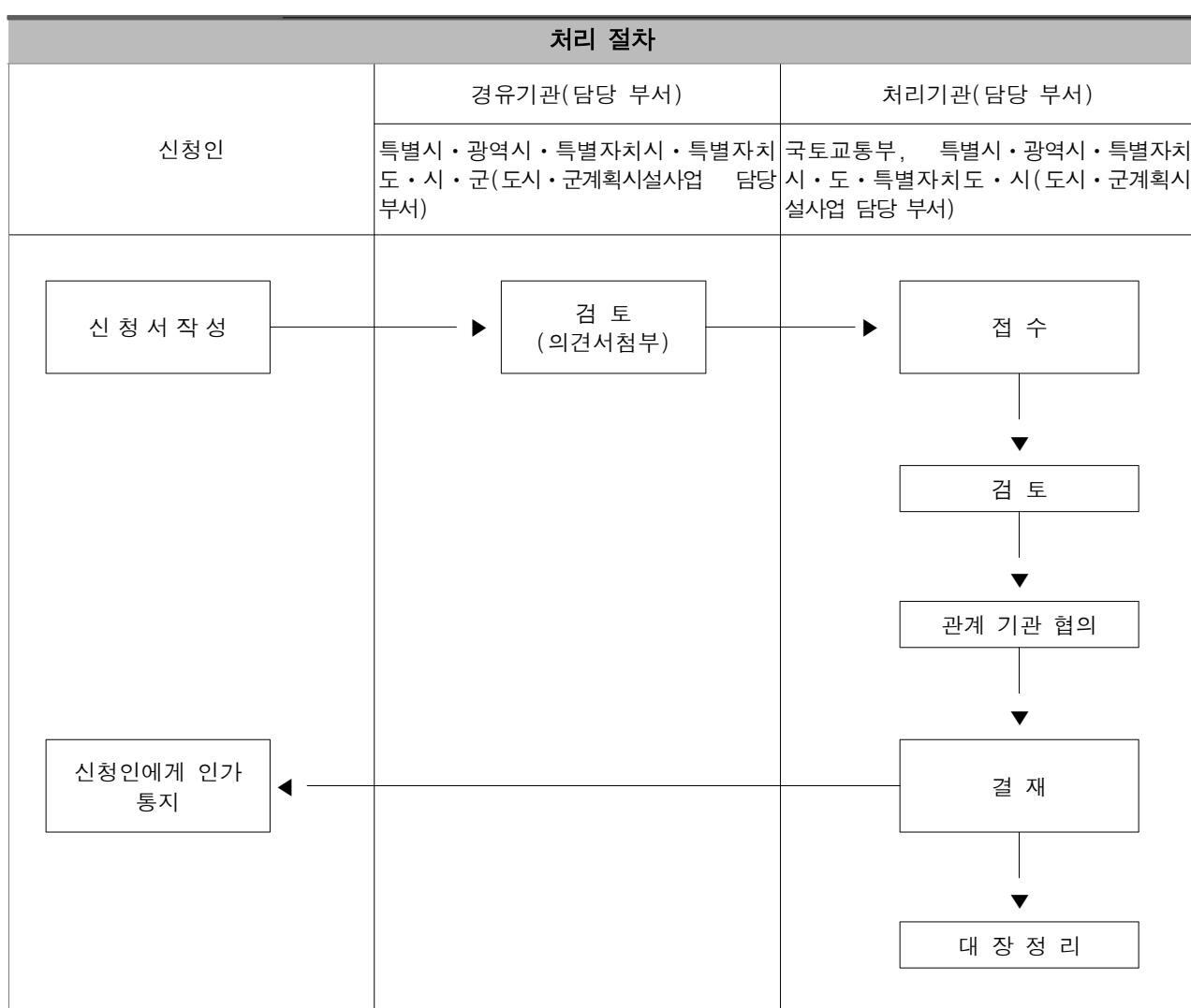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구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수수료 없음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m 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 완료 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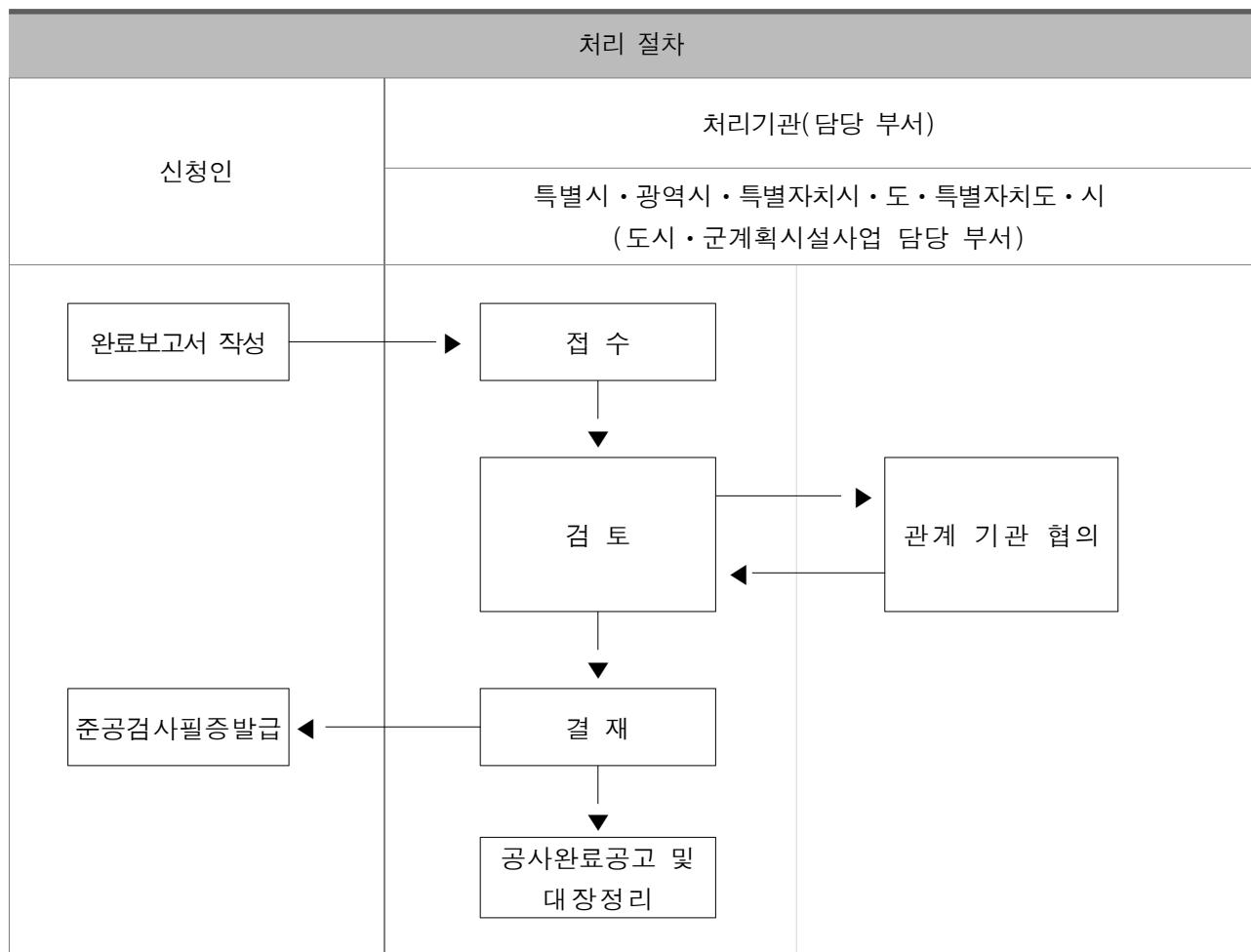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수수료 없음
	2. 설계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m 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직인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2호의2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7. 1. 20.>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7. 1. 20.>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예정통지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부과 예정금액	
	부과 기준	
	그 밖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예정금액을 통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한 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심사청구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예정통지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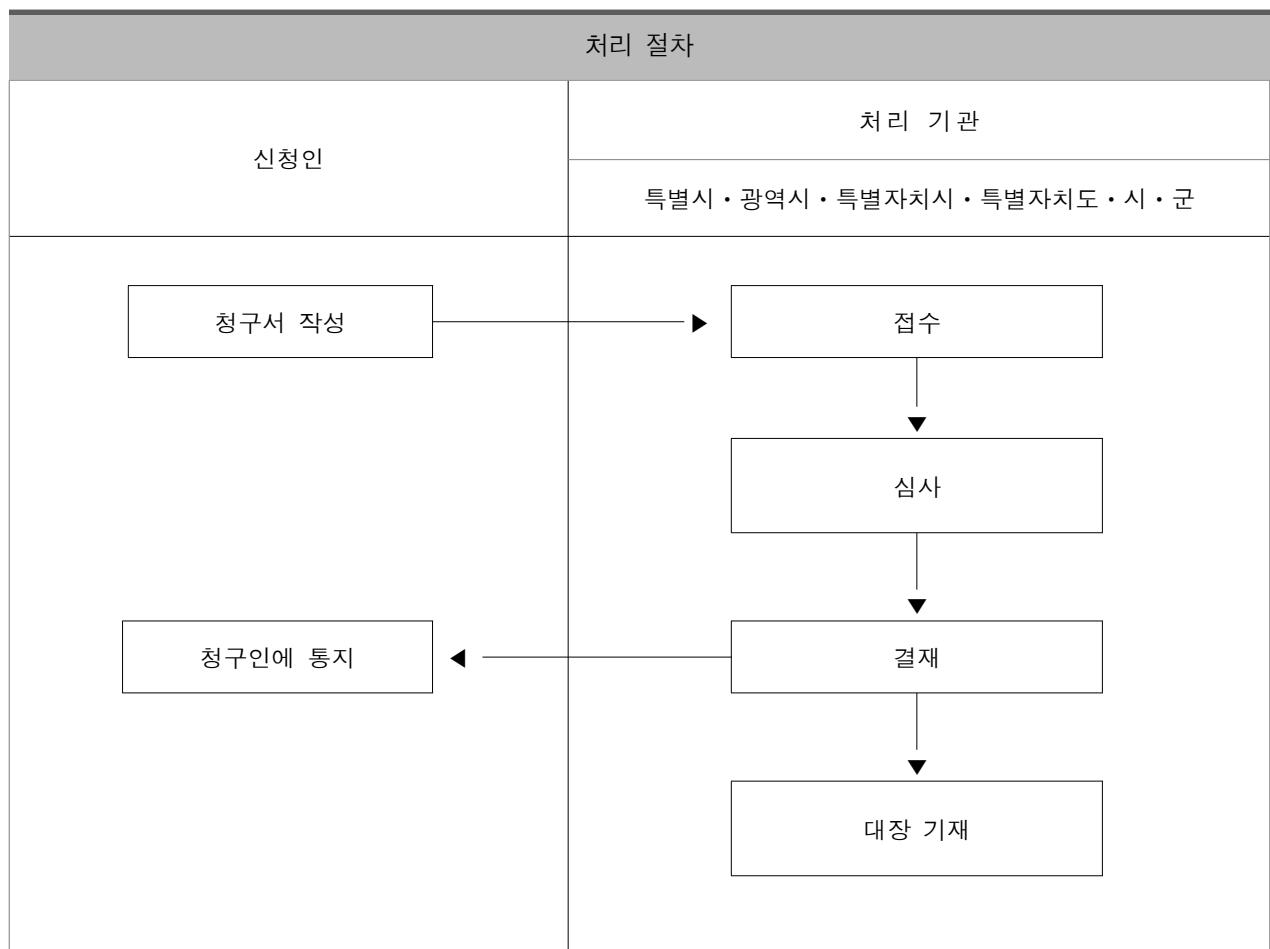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도면 등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

청구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심사 결정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구분	예정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의 결과
	설치비용액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2. 3. 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용부담내역

사업 명칭			
비용부담 대상지			
기반시설 개요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납부 기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제 호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정정통지의 내용	부과 대상 건축물		
	당초 고지내용	정정내용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납부 고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고지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6. 12. 30.>

(5쪽 중 제1쪽)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사용대장

기록자	담당
-----	----

1.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명	
위치	
부과 면적(㎡)	
사업기간	
인·허가 관청	근거 법령
인·허가 일	통보일

2. 납부의무자에 관한 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부과 대상 또는 납부의무자에 관한 변경사항

4. 설치비용 부과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적용 단가	원 / 건축단위연면적(m^2)
용지비용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0.4 범위 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원 / m^2
부과 대상 건축연면적	건축허가연면적	m^2
	부속용도면적	m^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주차장만 해당함
	공제면적	m^2 기초공제면적은 200 m^2
	부과대상 소계	m^2
부 담 률	%	
공 제 액	원	
부과결정 내 용	결 정 가 액	원
	결 정 일 자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정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구 분	발생일자	사 유

5. 인·허가신청 토지에 관한 사항

6. 납부 연기에 관한 사항

신청일	
허가일	
사유	
연기된 납부기한	

7.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일	
허가일	
사유	

분할납부 허가내용

구분	납부예정일	설치비용	적용이자율	이자금액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
1					
2					
3					
4					

8. 물납에 관한 사항

신청일		허가일	
사유			
납부 가액			

물납 토지 내역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m ²)	신청가액(원)	허가가액(원)
소계				
차액				

9.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1차 독촉일		사유	
2차 독촉일		사유	

10. 작성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직급	성명	서명	기재사유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사용대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물납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 내용	부과 대상						
	물납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m^2)	개별공시지가(원 / m^2)	공시기준일	기액
		합계					
설치비용액		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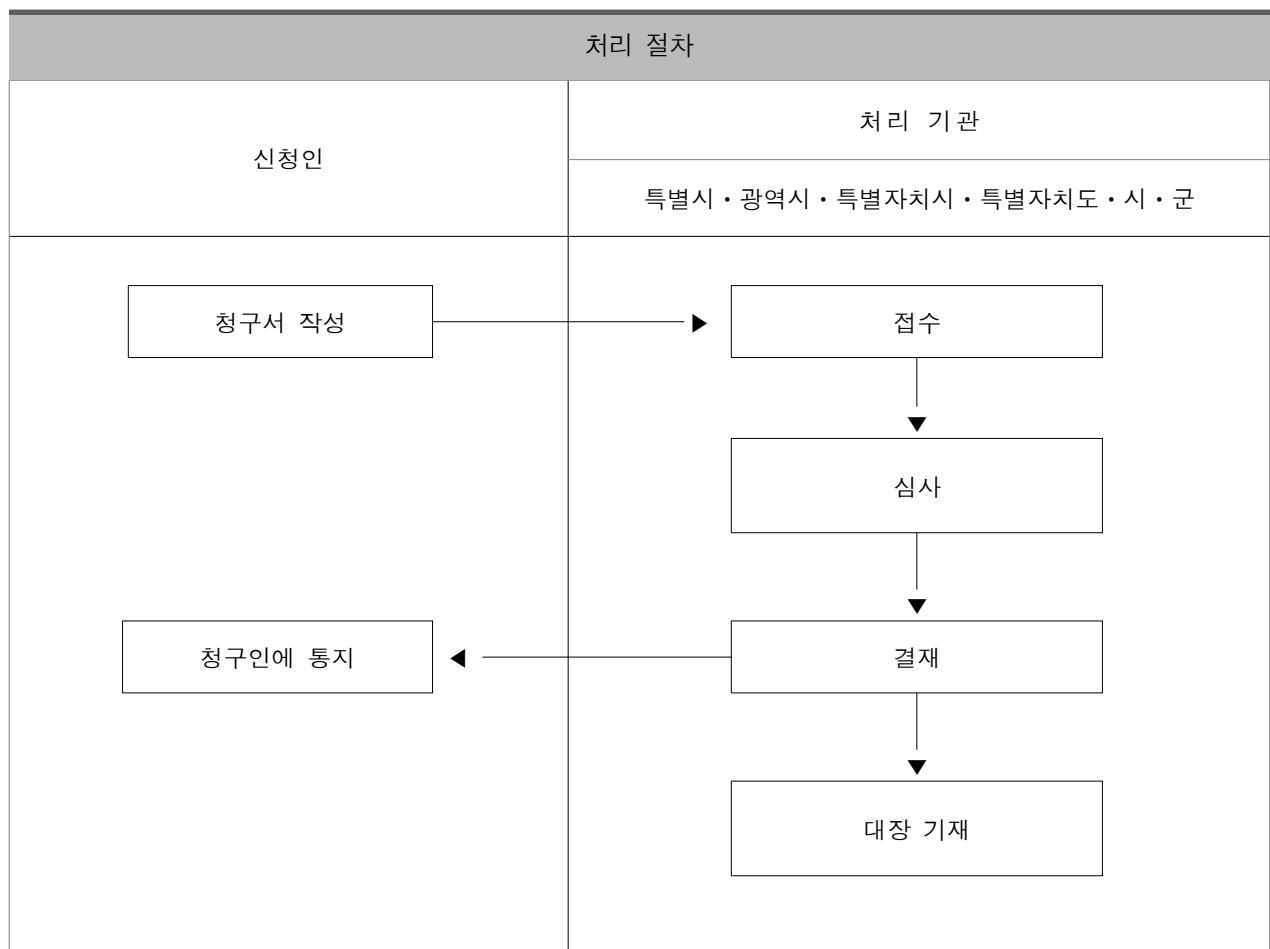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제 호

물납허가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허 가 내 용	부과 대상						
	물납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m ²)	개별공시 지가(원 / m ²)	공시기준일	가액
		합계					
설치비용액		차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4.8.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연기 희망일		
	연기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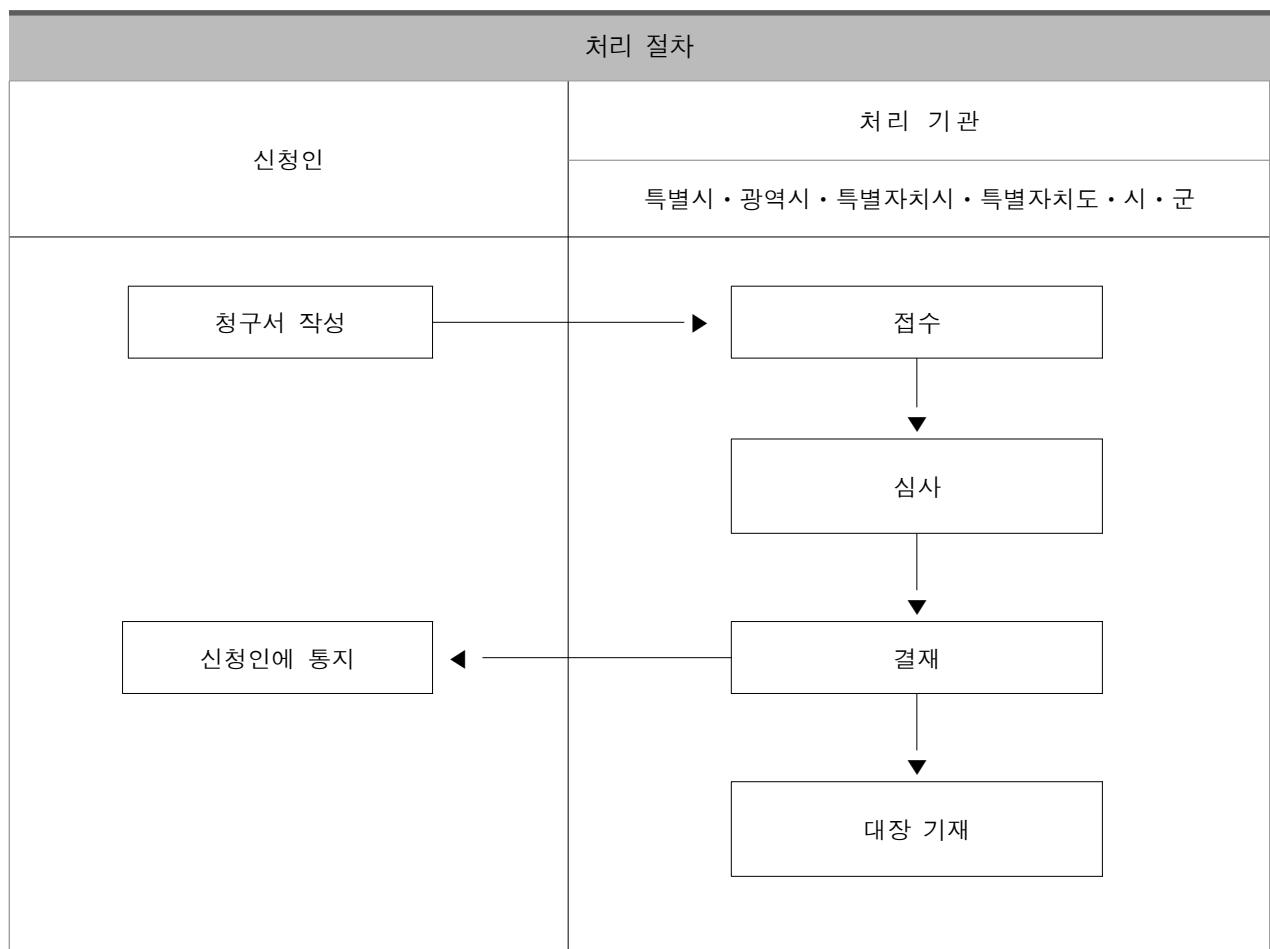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1서식] <개정 2014.8.7>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 기일		
	분납 희망일		
	분납 금액		
	분납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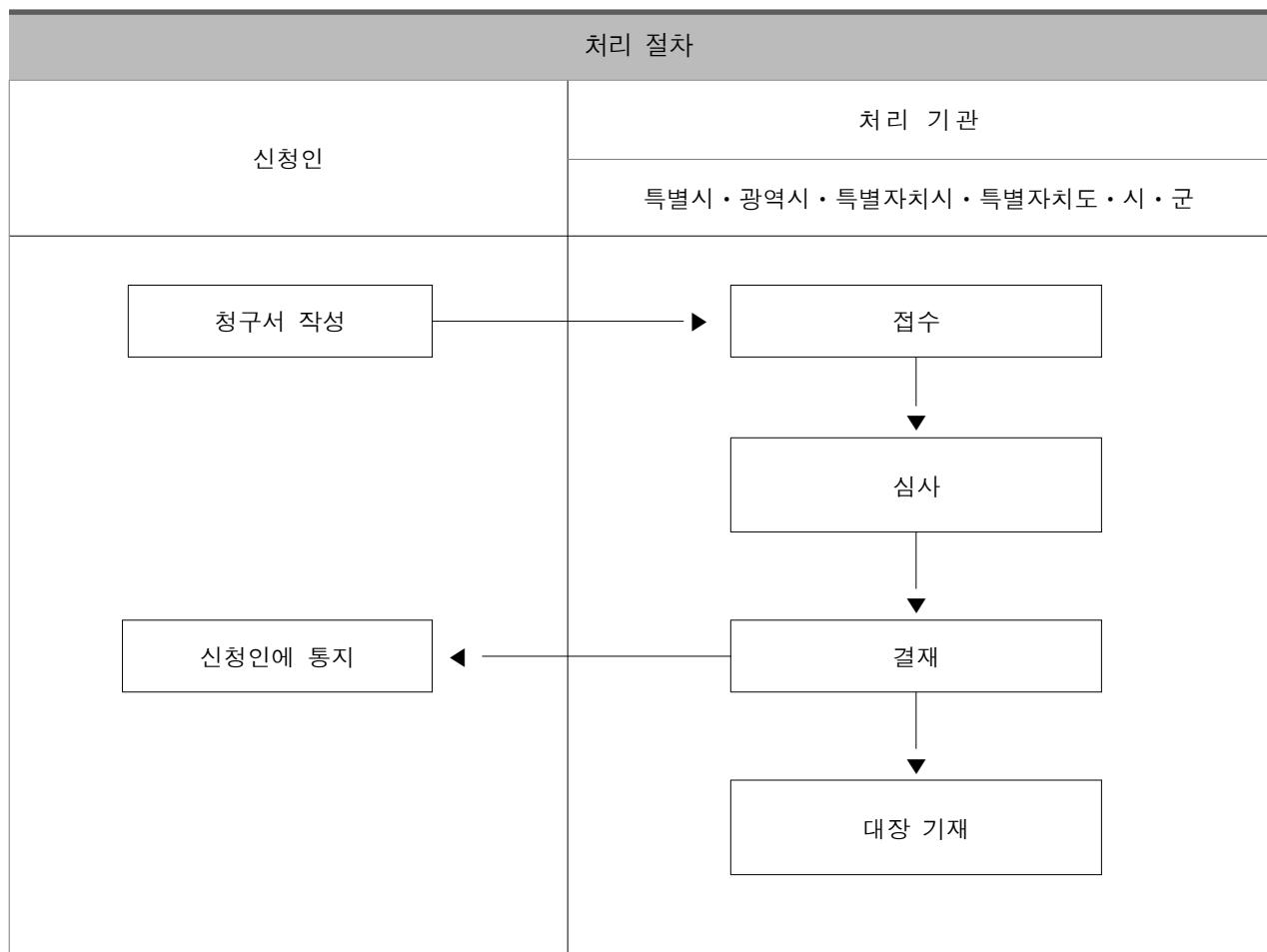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허가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당초 납부 기일	
	연기가 허가된 납부기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 기일의 연기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허가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당초 납부 기일			
분할납부 내용	납부 연월일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자 금액	납부할 금액
	합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4서식] <개정 2014.8.7>

제 호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독촉내용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납부 장소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二〇一〇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종류	예정금액
	1						
	2						
	3						
정착물의 표시	종류		내용			예정금액	
						원	
토지의 이용 목적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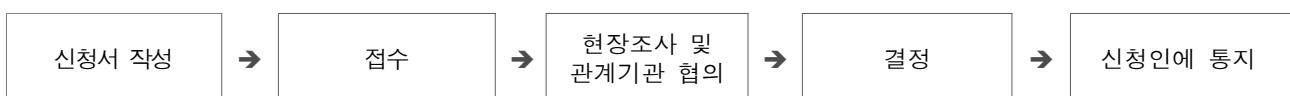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호

신 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유 효 기 간 20 . .부터
 20 . .까지

사 진
(2.5cm×3cm)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인]

시 장 · 군 수

86mm×50mm(보통용지(1종) 120g/m²)

제 호

허가증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치 또는 장소 :

허가내용 :

기간 : 20 부터 20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하도록 위 사람에게 토지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20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6.6.7>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6.6.7>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6.6.7>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호

검사공무원증표

소 속

(사 진)

직 위

2cm×2.5cm

성 명

유 효 기 간 20 . 부터

20 . 까지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사항을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인]

시 장 · 군 수

64mm×91mm

(보존용지(1종) 120g/m²)